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서 울 행 정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2구단647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이○
피 고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○○○○
	담당변호사 김○○
변 론 종 결	2023. 5. 3.
판 결 선 고	2023. 6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1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,393,450원(취득세 11,942,610원, 지방교육세 1,125,600원, 농특세 562,800원, 가산세 3,762,440원) 부과처분 및 17,370,940원(취득세 11,895,230원, 지방교육세 1,145,700원, 농특세 572,850원, 가산세 3,757,160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원)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○○ ○○구 B에 주사무소를 두고 총무원 운영, 국제포교활동, 불교문화 홍보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.

나. 원고는 2020. 6. 30. ○○ ○○구 C 외 1 필지 소재 D 제5층 E호(이하 '①부동산'이라 한다)를, 2020. 7. 22. 같은 토지 소재 D 제8층 F호(이하 '②부동산'이라 하고,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를 각 취득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, 2020. 6. 30. ①부동산을 원고의 상근 스님들의 포교연구실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유로, 2020. 7. 22. ②부동산을 종교행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.

라.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부동산이 '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'이라는 사유로 각 지방세 감면결정을 통지하였다.

마. 이후 피고는 2021. 5. 26. 현장조사(이하 '이 사건 현장조사'라 한다)를 실시한 후, 2021. 6. 3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,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○○특별시장은 2021. 9. 28.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.

바. 이후 피고는 2021. 10. 10. 원고에게 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11,942,610원, 지방교육세 1,125,600원, 농어촌특별세 562,800원, 가산세 3,762,440원 합계 17,393,450원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을, ②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11,895,230원, 지방교육세 1,145,700원, 농어촌특별세 572,850원, 가산세 3,757,160원 합계 17,370,9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사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. 1. 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2. 5. 4.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총무원의 운영 및 불교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, 그 사업 범위에는 G종교단체 총무원의 총무원장 직속 기구인 H 및 I의 운영 및 지원 활동이 포함되는 점, 원고는 승려인 교역직 종무원이 업무상 상경할 경우 사택 내지 숙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점, ①부동산은 일시적으로 H 및 I의 회의실로, ②부동산은 일시적으로 J(사무처)의 회의실로 각 사용된 점, 특히 ①부동산을 월 평균 10일 정도를 사용한 H의 본부장 K 스님은 L의 대표자이고, I의 본부장 M 스님은 N의 주지이며, ②부동산을 월 평균 10일 내지 15일 정도 사용한 O 스님은 J의 의장이자 P의 부주지 및 Q의 주지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지위에 있는 점,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21. 4. 30.자 기준으로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 및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19. 4. 10.부터 2020. 4. 9.까지 ○○ ○○구 C 소재 D건물 R호를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 본부장의 숙소로 사용하였고, 2019. 12. 5.부터 2020. 12. 4.까지 같은 토지 소재 D건물 S호를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(갱신)계약을 체결하고 J 의장의 숙소로 사용하였다.

2) 피고는 2021. 5. 2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현장조사 후 '①부동산은 일시적으로 사단법인 H 및 I의 회의실 겸 스님들의 숙소로, ②부동산이 일시적으로 J(사무처)의 회의실 겸 스님들의 숙소로 각 사용 중임을 확인한다.'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.

3) 위 현장조사 결과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, ①부동산의 출입문에는 H와 I라는 명패가, ②부동산의 출입문에는 J(사무처)라는 명패가 각 부착되어 있고, 그 내부에는 세탁기, 싱크대, 탁자, 의자, 침구류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예불을 위한 제단이나 불상 등은 보이지 아니한다.

4)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의 시설사용일지에 의하면, ①부동산은 종단 시무식, H 회의, 사무총장 퇴임행사, 총무원장스님 및 원로스님 신년 하례행사 등 명목으로, ②부동산은 J 사무처 집무 및 결재, 포교원장 스님 퇴임식, 원로회의 등 명목으로 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.

5) 한편 G종교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■ G종교단체 종헌

제19조

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지위를 가진다.

제31조

본종은 립법기구로서 J를 둔다.

제51조

본종은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○○특별시에 총무원을 둔다. 다만, J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52조

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원 A 리사장, T대학 리사장, U 리사장,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할 수 없다.

⑤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호 법부장은 J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.

제54조

①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.

■ 총무원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원 종헌 제51조, 제57조에 의거하여 종단 행정사무의 통일적으로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지위)

총무원장은 위로 종정을 모시고, 종단을 대표하며,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의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.

■ J법

제1조(입법근거)

이 법원 종헌 제31조와 제50조에 의하여 J의 권한,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3조(구성)

J는 J의원선거법에 의해 직선 및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의장의 직무)

① 의장은 J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■ G종교단체 H 설치·운영에 관한 령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총무원장의 직속기구로 'G종교단체 H'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불교 교류활성화와 통일에 관한 종책수립, 그리고 민족화합과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

본부는 총재, 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, 본부장, 집행위원회, 각 위원회, 사무총장,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총재)

본부의 총재는 G종교단체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8조(본부장)

①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며, 활동을 총괄한다.

② 본부장은 총재가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■ G종교단체 I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종단의 미래 전략 수립 및 화합과 혁신을 위한 관련 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총무원장 직속의 "G종교단체 I(이하 본부)"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

본부는 본부장, 운영위원회,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산하기구, 사무총장,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본부장)

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■ 원고 정관

제3조(목적)

본 법인은 G종교단체 종헌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하여 조직된 G종교단체 총무원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총무원의 운영
2. 국제포교활동
3. 불교문화 홍보
4. 포교·교육사업
5. 사회복지사업
6. 공제사업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7.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 사업

제5조(임원)

본 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사 5인 이내

제6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
①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

1. 이사장인 이사는 G종교단체 총무원장으로 한다.
2. G종교단체 총무원 총무부장, 동 기획실장, 동 재무부장, 동 문화부장, 동 사회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3. 이외의 이사는 J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0 내지 18, 20, 2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라. 판단

1) 관련 법리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"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"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"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"를 규정하고 있다.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368 판결 등 참조).

한편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'그 사업에 사용'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, '그 사업에 사용'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,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(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가)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D건물 R호 및 S호를 I본부장 및 J 의장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던 점, ㉡ 원고는 'J의장 및 I본부장 등 각 본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부의 본부장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스님들이 사용할 숙소가 필요하였고,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.'라는 취지로 그 취득의 목적을 진술한 점, ㉢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세탁기, 싱크대, 탁자, 의자, 침구류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예불을 위한 제단이나 불상 등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, 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설사용일지에 의하더라도, ①부동산은 종단 시무식, H 회의, 사무총장 퇴임행사, 총무원장스님 및 원로스님 신년 하례행사 등 명목으로, ②부동산은 J 사무처 집무 및 결재, 포교원장 스님 퇴임식, 원로회의 등 명목으로 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 의장 및 H 본부장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) 종교단체에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편적 문화인 종교 등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데 있는바,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종교의식, 예불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교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종교의식, 예불 등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도 아니고,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.

다) 이 사건 각 부동산이 J 의장 및 H 본부장 등의 숙소로 제공되기는 하지만, ㉠ J는 총무원 운영, 국제포교활동, 불교문화 홍보 등 사업 목적을 영위하는 원고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, ㉡ 총무원의 대표자는 총무원장이고 총무원장의 직속 기관인 H 및 I 등의 본부장은 총무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구성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원들이 원고의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문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25

[별지]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50조(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)

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. 끝.